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석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64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0.

발 의 자 : 송석준 · 김미애 · 고동진
김대식 · 윤상현 · 김형동
김상훈 · 윤한홍 · 조배숙
성일종 · 이인선 · 배준영
신성범 · 박덕흠 · 김성원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용 면세유, 농업법인 및 농협 관련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에 대한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. 하지만 해당 특례 중 일부가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.

하지만 조세 특례가 일시에 종료될 경우,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영농비용 및 세부담 증가로 이어져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.

이에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인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· 개별소비세 및 교통 · 에너지 · 환경 · 교육 · 자동차세 면제 특례,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특례,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

인세 면제 특례,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,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업경영의 안정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66조, 제68조, 제106조, 제106조의2 및 제121조의23).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6조제1항 중 “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29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29년 12월 31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29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29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68조제1항 중 “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29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29년 12월 31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“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29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4호의5 및 제12호”를 “제1호, 제4호의5 및 제12호”로, “제4호의2”를 “제3호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적용하고, 제4호의2”로 한다.

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2026년 12월 31일”을 각각 “2029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121조의23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29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6조(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) ①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(이하 “영농조합법인”이라 한다)에 대해서는 <u>2026년 12월 31일</u>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(이하 “식량작물재배업소득”이라 한다)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.	제66조(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9년 12월 31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②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<u>2026년 12월 31일까지</u>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	② ----- ----- <u>2029년 12월 31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. 이
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
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
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
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
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③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
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
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
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2
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
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
율은 「소득세법」 제129조에
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,
그 배당소득은 「소득세법」
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
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.

④ ~ ⑥ (생략)

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
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
영농조합법인에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
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
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⑧ ~ ⑩ (생략)

-----.

-----.

③ -----

-----202
9년 12월 31일-----

-----.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
----2029년 12월 31일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⑧ ~ ⑩ (현행과 같음)

제68조(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) ①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회사법인(이하 “농업회사법인”이라 한다)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,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(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)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

[illegible]

세액을 감면한다.

② (생략)

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(「농지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으로 한정한다)에 제66조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제66조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.

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,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

_____.

② (현행과 같음)

[illegible][illegible]

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
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⑤ (생 략)

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
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
면제한다. 이 경우 제1호부터
제3호까지, 제4호의5 및 제12호
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
한 것에만 적용하고, 제4호의2,
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
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
적용하며, 제8호 및 제8호의2는
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
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,
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
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
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
며,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
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,
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
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.

1. ~ 13. (생 략)

② ~ ⑤ (생 략)
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

① -----

----- 제1호, 제4
호의5 및 제12호-----

----- 제3호는
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
것에 적용하고, 제4호의2-----

-----.

1. ~ 13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용역에 대해서는 <u>2026년 12월 31일까지</u>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1. 2. (생략) ⑪ (생략)	⑩ ----- ----- <u>2029년 12월 31일</u>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⑪ (현행과 같음)
---	---